

#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입찰유의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행하는 충북 오송 상록캐슬 단지내 상가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입찰유의서는 부동산매매(분양)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동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 **제3조(입찰참가자격 제한)**

- ① 입찰장소 및 주위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방해하는 자
- ② 경쟁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하려는 자
- ③ 입찰진행 업무를 방해하는 자

**제4조(입찰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마쳐야 한다.

- ① 입찰참가신청서 (공단의 소정서식)
- ②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 ③ 대리인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제5조(현물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매입부동산의 현물을 열람하여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건별로 입찰총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공단이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심료가 소요되는 자기앞 수표는 추심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유찰자의 환불계좌(온라인)로 이자가산 없이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일까지 반환하지 않고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해당분을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공단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입찰당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입찰서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입찰금액은 천원단위까지만 기재하여야 하며,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야 한다.  
(천원 단위 미만으로 기재한 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한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한문,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금액 순서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개 물건에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개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이의 취소, 철회, 교환, 반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9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3. 동일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4. 동일물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5. 입찰서에 기재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 6. 입찰서에 입찰자의 기명 및 날인이 없는 경우
- 7.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 미만일 때

**제10조(입찰의 성립)** 2인 이상 응찰한 경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1조(개찰)** 개찰은 매각 공고 시 정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의 입회하에 행한다.

- 제12조(낙찰자의 결정)** ① 공단이 정하는 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② 동가의 낙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공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3조(관계사항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매각 공고에 명시된 사항, 기타 입찰에 관련된 부동산 소재 현장점검(매도인 및 입찰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숨은 하자의 조사의무 등), 관계법규, 도시계획사항, 행정상의 규제·제한사항, 공매공고,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 조건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4조(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공단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금납부방법은 매각 공고한 바에 따른다.  
③ 공단에서는 매각대금의 전액을 수령하기 전에는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사용허가서(승낙서 등)의 발급을 불허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과 함께 계약서에 각각 기명 및 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2.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3. 공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계약체결 후 소정의 의무사항 기타 입찰유의서나 계약서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금은 공단에 귀속되고 당해 부동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의 회복 또는 훼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기타사항)** 매각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